경인아라뱃길본부 공고 제2016 - 무상사용권 001호

경인항(서해갑문) 항만시설 무상사용권리의 유상양도를 위한 입찰 공고

우리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항만법」에 근거하여"경인항(서해갑문)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하였으며, 「항만법」 제15조, 제8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권리를 유상으로 양도코자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16. 8. 22

K-water 경인아라뱃길 본부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경인항(서해갑문) 항만시설 무상사용권리 양도

나. 양도금액 : ₩2,000,000,000.-(예정가격 : ₩ 1,800,000,000.-)

* 1단위 양도금액 : ₩500,000,000.-(1단위 예정가격 : ₩450,000,000.-)
* 양도금액이 20억원이므로, 4단위로 분할하여 입찰합니다.

다. 계약기간 : 1년(계약상대자가 당사로부터 이전받은 무상사용권리로 항만시설사용료의 상계가 개시되는 그 사용일로 부터 1년)

2. 양도 목적물 및 성격

가. 경인항(서해갑문) 비관리청 항만공사 개요

- 시 행 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 시행근거 :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시설 공사
- 사업기간 : 2009. 6. 30 ~ 2012. 7. 16
- 총사업비 : 187,735,811천원(항만법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비)
  * 금회 양도분 20억원
- 총사업비 확정통보일 : 2016.4.20. (준공확인일 : 2015.12.24)
- 위 치 :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일원
- 시설현황 : 서해갑문, 유도벽, 서해갑문통제소, 항로표지시설 등

나. 유상양도의 목적물은 당사가 갖고 있는**"국가관리항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 권리"**입니다.

- (국가관리항) 경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장항항, 군산항, 목포항, 마산항, 포항항, 동해·묵호항

  ※ 항만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거 항만공사 관할 항만시설은 제외

다. 무상사용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위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양수받은 무상사용 권리(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 납부하여야 할 항만시설사용료를 면제(상계)받게 됩니다.

  ※ 항만법 제15조 제4항, 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

나. 희망수량 경쟁입찰(최고가)

다. 현장입찰

4. 입찰금액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기간 내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수할 희망수량(단위)과 그 단가(1단위 예정가격 이상)로 입찰서(별지서식 4)를 현장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A사 입찰(양수금액 10억원) : 필요물량(2단위) 및 희망계약단가(@460백만원)을 기입

5. 입찰참가 자격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청에 납부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입니다.

가. 해운법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해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5항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 업체

다.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 제1호,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항만하역업을 등록한 업체

라. 항만시설을 이용함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화주 등

6. 입찰참가신청

가. 기　　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16. 08. 30(화) 14:00까지**

나. 장　　소 : 경인아라뱃길본부 경영판매팀 김은주 과장

* 인천시 서구 정서진1로 41 경인항통합운영센터 4층 경인아라뱃길본부 경영판매팀

다. 신청방법

당사가 지정한 장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또는 전자메일 신청은 불가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도착분만 인정합니다.

라. 제출서류

①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확인 날인) 1부

③ <입찰공고문 5.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입찰공고문 5. 입찰참가자격 '라'> 사항은 Port-Mis 시스템 납부실적 자료 제출

④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별지 서식 1

⑤ 입찰보증금납부각서 1부 * 별지 서식 2

⑥ 서약서 1부 * 별지서식 3

⑦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⑧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

마. 입찰참가 신청시 유의사항

- 입찰 신청자와 계약체결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 부도, 파산, 법정관리,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를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모든 서류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교환·변경·취소 및 회수를 하지 못합니다.
- 당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제4항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며, 당사의 서식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각서(별지서식 2)로 납부를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8. 현장입찰(가격서 제출)

가. 입찰일시 : 2016년 8월 30일(화) 14:00

나. 입찰참가대상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자

다. 입찰서 제출방법 : 대표자 직접제출(법인인감, 대표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재직증명서 제출

※ 우편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공동 입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제출장소 : 경인아라뱃길본부 4층 소회의실

9.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 단가 이상,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참여하여

(1순위) 최고 단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2순위) 동일한 단가의 입찰자 중 입찰 수량이 많은 자

(3순위) 동일한 단가의 입찰 수량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나. 낙찰자로 통보 받은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10.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전까지 양수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또는 보증이행증권)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양수·양도 계약 종료시 반환되며, 보증금 반환이자는 없습니다.

11. 유의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붙임 계약서(안)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양도·양수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투찰 시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양수자는 계약체결 후 양수받은 무상사용 권리를 양도자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양도, 보증·담보제공 등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내지 계약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12. 청렴계약 시행

가. 당 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서식 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과 관련하여 기타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 전일까지 서면으로 당사에 그 설명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에 업체별 입찰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자는 입찰참가 신청일시 및 가격입찰서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고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한자이어야 합니다. 본 사항 위반시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별지 서식 6)'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본부 경영판매팀
☎ 032) 590 - 2221~2222

붙 임 : 1. 입찰관련 각종 서식 및 세부 기준
2. 항만시설 무상사용 권리의 양도·양수 계약서(안).

붙임1

입찰관련 각종 서식 및 세부 기준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2)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

○ 서식 3) 서약서

○ 서식 4) 입찰서

○ 서식 5)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 서식 6)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금액의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공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 (서 명) 대 리 인 : 1) 성 명 (서 명) 2)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공사에서 정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여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①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용인감으로 원본확인 날인) 1부
③ <입찰공고문 5.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입찰보증금납부각서 1부
⑤ 서약서 1부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⑦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

2016 . . .

신청인 (사용인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서식 2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 입찰건명 :
2. 입찰금액 : 일금 원정(₩)
3. 입찰보증금 : 일금 원정(₩)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금액 (십원단위 절사)

위 입찰참가 신청 후 낙찰자(계약대상자)로 통보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귀 공사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낙찰을 무효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 입찰보증금을 조건없이 귀 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현금으로 귀 공사에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입찰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사용인감)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3

서 약 서

당사는 귀 공사가 추진 중인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의 유상양도를 위한 공고와 관련하여 본 거래가 공고절차에 의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 다 음 -

1. 본 입찰신청자는 입찰참여를 위하여 제출하는 입찰참가신청서 등 관련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 대상자에서의 제외(계약 취소 포함) 및 이로 인한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귀 공사에서 공고한 모든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공고 및 계약대상자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고 시 제시한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불이익은 당사가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 입찰신청자는 귀 공사의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는 일체의 정보와 그 밖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귀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년 월 일

입찰신청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사용인감)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4

집행자인	

입 찰 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건 명 :

총양수금액 :
(필 요 물 량 : 단위)

입찰금액(희망계약단가) : 일금 원정 (₩)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글로 기입할 것

본인은 귀 공사의 입찰공고 조건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공사에 의하여 수락되어 계약체결이 이루어 질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사용인감)

서식 5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 발 주 건 명 :

한국수자원공사의 계약 관계직원(계약업무담당자, 감독자 등)은 본 건 발주와 계약체결 및 이행이 성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어떤 형태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시에는 중징계 및 형사고발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을 것이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한다),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취소,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의 감수,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계약상대자
상 호 :
성 명 : (사용인감)

한 국 수 자 원 공 사 사 장 귀 하

서식 6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20 년 월 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귀하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인)

이번 경인항(서해갑문) 무상사용권 양도·양수계약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겠으며,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2 **양도 · 양수 계약서**

경인항 서해갑문 무상사용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경인항(서해갑문) 항만시설공사」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총사업비로 확정된 금액의 일부에 상응하는 무상사용권을 한국수자원공사(이하 "K-water")와 ○○○○㈜(이하 "양수인") 사이에 양도·양수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 대금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K-water와 양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이 계약과 관련한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경인항(서해갑문) 항만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3. 공사기간 : 2009.6.30. ~ 2012.7.16.
4. 준공일자 : 2015.12.24.
5. 총사업비 : 187,735,811천원(부가세 미포함)

제3조(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사업비" 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총사업비로 확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란 제4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3. "계약기간" 이란 양수인이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관리권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4. “양도·양수금액”이란 양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 목적물의 한도 금액을 말한다.
5. “납부대금”이란 양수자가 계약목적물을 이전받는 대가로서 K-water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계약목적물 및 양도·양수금액 등) 계약목적물 등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물 : 제2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K-water가 설정받은 무상 사용권
2. 양도·양수금액 : 일금 원 (₩ 원)
3. 납부대금 금액 : 일금 원 (₩ 원) ※ 부가세 별도
4. 할인율 :

제5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양수인이 이전받은 계약목적물로 항만시설사용료의 상계가 개시되는 그 사용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납부대금 납부가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완료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총 납부 금액이 제4조의 납부대금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이 계약을 납부대금 전액이 납부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이 계약 체결 당시 양수인이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한 후 이 계약에 따른 상계를 개시하도록 한다.

제6조(권리의 이전) ① K-water는 이 계약 체결 이후 양수인에게 제4조의 계약목적물이 차질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항만법」(이하 "법") 제87조에 따라 양수인과 공동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권리의 이전을 위한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가신청은 제4조의 양도·양수금액 전액 상당의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한다.

③ 위 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항만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31조의 절차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포함) 또는 K-water가 양수인에게 필요한 자료 내지 행위를 요구할 경우 양수인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④ K-water와 양수인 사이의 무상사용권 이전은 제1항과 제2항의 절차에 따라 K-water와 양수인 모두가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최종 인가 통보를 수령한 날에 성립된 것으로 한다.

제2장 양도·양수금액 및 정산 등

제7조(사업비 보전 개시 등) ① 양수인은 제6조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인가 통보를 받은 후에 면제받고자 하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투자비 보전 신청 및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여 투자비 보전절차를 즉시 개시하여야 한다.

② K-water는 제4조의 납부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무상사용권 이전 최종 인가 통보 수령일이 해당되는 월에 청구하고, 양수인은 세금계산서 수령 후 해당 분기 내에 부가세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 월에 K-water의 지정된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해야 하며, 이를 통보한다.

③ 양수인은 항만청에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만큼을 상계처리하고 각

건별로 작성한 월간실적목록표 및 관련 증빙(Port-MIS 전산에서 상계처리한 실적을 프린트한 사본으로 갈음한다) 을 **익월 10일 이내**(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K-water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월간실적목록표와 Port-MIS 전산에서 상계처리한 실적이 상이할 경우 Port-MIS 시스템 납부실적을 우선으로 한다.

제8조(납부대금) ① K-water는 양수인이 제출한 월간실적목록표와 항만청 Port-MIS의 항만시설사용료 실적을 대조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양수인은 K-water로부터 양수받은 계약목적물로 면제받은 당월 항만시설사용분에 대해 면제금액에서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을 **익월 13일(공휴일 경우 전일)까지** K-water에게 아래의 계좌로 납부한다.

국민은행	-	-	(예금주 : 한국수자원공사)

③ 양수인이 제2항의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5일(익월 18일한, 공휴일 제외, 5 Banking Days)까지 입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지연할 경우 K-water는 양수인에 대한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수받은 금액의 미상계 잔액 상당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K-water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④ 양수인이 제2항의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익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지체이자(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⑤ 납부대금의 변제 순서는 지체이자를 우선적으로 충당한다.

제9조(분기·연도별 재확인) ① K-water는 항만청 Port-MIS상 양수인의 항만시설사용료 실적과 대조하여 분기마다 정산하며, 매년 해당사업 시행청에서 1월 31일까지 비관리청에 통보하는 타항만시설 사용료 면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여 연간 정산한다.
② K-water는 정산과 관련하여 양수인에게 그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수인은 적극 협조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의 반환) ① 계약 해지 및 기간 종료(상호 협의 후 연장 제외)시에는 양수인이 사용한 계약목적물이 양수인이 납부한 금액에 미달해 잔여금액이 발생한 경우 양수인은 그 즉시 K-water에 잔여분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이 제1항의 권리·의무 이전 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K-water는 양수인의 동의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양수인이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및 위임장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권리·의무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양수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1조(K-water의 의무) K-water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이전을 위해 관련 법에서 정한 행위
2. 이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만법, 정부정책(제도·지침·규제 등 포함)의 변경 사실을 인지 시 양수인에게 통보

제12조(양수인의 의무) 양수인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납부대금 및 부가세환급분 지급
2. 부도(파산·영업정지·합병·영업정지) 등 경영상 변화 등으로 계약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시 통보
3. K-water가 권리 이전 또는 사용실적 확인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해 양수인에게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및 업무 협조

제13조(금지행위) ① 양수인은 K-water로부터 양수받은 계약목적물을 K-water의 사전 동의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보증·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② 양수인은 이 계약이 종료(또는 해지)될 때까지 K-water 외 제3자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계약 해지 등

제14조(계약 해지 등) ① K-water는 양수인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담합,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낙찰 받은 경우
2. 제8조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양수인이 제2항의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5일(익월 18일한, 공휴일제외, 5 Banking Days)까지 입금을 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지연할 경우
3. 부도·파산·영업정지·영업의 휴폐업·신용평가등급 B등급 미만※ 등 경영사정의 악화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확인

4. 계약사항의 중대한 또는 반복적 위반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 간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1. 관련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화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울 경우
2. 기타 당사자 쌍방의 귀책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어려울 경우

③ K-water가 제1항에 따라 계약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양수금액에서 계약 해지 시점까지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K-water에 지급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5조(계약의 해석) ① 계약 사항에 대한 해석의 상이 또는 계약서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K-water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사항) ① 당사자들은 이 계약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들은 본 계약과 관련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모든 위험은 해당 당사자가 책임지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계약기간 중 계약사항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K-water와 양수인간 변경 내용에 대한 합의 후 그 내용을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특약사항) ① 양수인은 계약체결 전까지 양수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금(또는 보증이행증권)으로 납부해야 하며,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잔여 계약목적물을 K-water에게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권리·의무 이전인가신청서 및 위임장에 인감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K-water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수인은 계약 해제·해지일 또는 종료일부터는 K-water의 동의나 승인 없이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서는 공증해야하고 이는 본 계약의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증관련 비용은 K-water가 부담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 법인인감 날인 및 공증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본부장 임성호 (인)**
	주 소	인천시 서구 정서진1로 41 경인아라뱃길본부
	법인번호	
	연 락 처	(032) 590-2221
양수인	성 명	**(인)**
	주 소	
	법인번호	
	연 락 처	

<첨부 1> 위임장

<첨부 2> 권리의무이전 인가 신청서

첨부1

위 임 장

수 임 자 (성 명)
(주 소)

당 사는 위 수임자와 체결(체결일 : 년 월 일)한 '경인항(서해갑문) 무상사용권 양도·양수 계약서 제10조(권리의 반환)에 대하여 수임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한 행위 및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붙임 1의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서 작성 및 해당 지방해양항만청에의 신청(제출)

붙 임 : 1. 권리·의무 이전 인가 신청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별첨.

2016. .

(성 명)

위 임 자 (법인인감)

(주 소)

첨부2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6.23>

권리·의무이전 인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내용	허가(승인)일 및 근거
	허가(승인)목적 및 개요
	준공기간
	공사공정률
	양도 사유

「항만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지방해양항만청장
시 · 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	접 수	→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전체공정 검토	→	결재
신고인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